

1. 개정안의 레미콘 물성시험 기준과 KS의 물성시험 빈도가 상이하고 개정안의 내용을 적용시키기 전 KS규정부터 먼저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.

2. 시험빈도를 기존 150m³마다를 120m³마다로 변경 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되나, 국토부에서 시행중인 건설현장 점검시, 품질관리자 검직 여부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건지 품질관리자 검직으로 지적 받은 현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.

점검 시 공사일보, 명함, 자리파악만 점검해도 이 사람이 품질관리자 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한 사안을 품질관리·시험계획서상 서류적인 배치만 확인하고 끝나는 형식적 점검을 중단하시고 제대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대다수 혹은 건설현장의 80%이상 공사금액별, 면적별 품질관리대상공사에 맞는 품질관리자를 배치를 하지 않고 시험빈도를 조정하여 품질관리자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말씀드리며, 아울러 감리자의 감리업무지침 및 세부기준 또한 변경해주시어 건설현장에서 감리자의 품질관리자 검직을 암묵적 묵인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리자의 업무지침 및 세부기준 또한 제도적 개선을 요청드립니다.

품질은 강화되고 현실은 후퇴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.

제도개선의 문제가 아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